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4

발의연월일: 2020. 7. 10.

발 의 자:이상헌・안민석・박재호

김진표 · 김병욱 · 김민석

홍정민 · 신정훈 · 김기현

김홍걸 · 김성주 · 문진석

한병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,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"을 "절터, 옛무덤, 조개무덤, 성터, 궁터, 가마터,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 (史蹟地)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큰 것"으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진흥"을 "진흥,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사적,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"를 "사적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사적, 명승, 천연기념물"을 "사적"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1호 중 "보호물·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·반입 신고된 것"을 "보호물 및 보호구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38조를 삭제한다.

제39조제1항 본문 중 "국보, 보물, 천연기념물"을 "국보, 보물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0조제1항제9호 ·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1조를 삭제한다.

제87조제1항제1호 중 "사적, 명승, 천연기념물로"를 "사적으로"로 한

다.

제88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89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9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95조의 제목 중 "사적 등에의"를 "사적에의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사적,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"을 "사적"으로 한다.

제99조제1항제1호 중 "보호물,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"을 "보호물 및 보호구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00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03조제1항제2호 중 "제40조제1항제6호·제9호·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"을 "제40조제1항제6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문화	제2조(정의) ①
재"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	
로 형성된 국가적・민족적 또	
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	
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	
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	
말한다.	<u>.</u>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기념물: <u>다음 각 목에서 정</u>	3 <u>절터, 옛무덤, 조개</u>
하는 것	무덤, 성터, 궁터, 가마터, 유
	물포함층 등의 사적지(史蹟
	地)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
	시설물로서 역사적·학술적
	가치가 큰 것
가. 절터, 옛무덤, 조개무덤,	<u><삭 제></u>
성터, 궁터, 가마터, 유물포	
함층 등의 사적지(史蹟地)	
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	
<u>시설물로서</u> 역사적·학술	
적 가치가 큰 것	
나.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	<u><</u> 삭 제>
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	
<u> 어난 것</u>	

다. 동물(그 서식지, 번식지, <삭 제> 도래지를 포함한다), 식물 (그 자생지를 포함한다), 지형, 지질, 광물, 동굴, 생 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 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•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 치가 큰 것

4. (생략)

② ~ ⑨ (생 략)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(생 략)

- ② 지정문화재(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)의 수리·실측·설계·감리와 매 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,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제25조(사적, 명승, 천연기념물의 지정)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, 명승 또 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 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적, 명승, ② -

4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⑨ (현행과 같음)	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(1
(현행과 같음)	
②	
<u>진흥,</u> 자연유산	의
<u>보존 및 활용</u>	
제25조(사적, 명승, 천연기념물:	의
지정) ①	
<u>사적으로</u>	

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35조(허가사항) ① 국가지정문 화재(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 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 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 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(변경 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아야 한 다.

1. 국가지정문화재(보호물·보 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 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 라 수입·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)의 현상을 변경하

•	35조(허가사항) ①	
	1보호물	
	<u> 보호구역</u>	
		

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2. • 3. (생략)

4.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<삭 제>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, 식물, 광물을 포획(捕獲)・채취(採取)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

② ~ ⑤ (생 략)

제38조(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)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 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, 약 물 투여, 수술,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(이하 "치료"라 한 다)은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 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지정절차 및

2.·3. (현행과 같음) <<u>삭</u> 제>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<삭 제>

- <u>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</u> <u>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u>
- 1. 「수의사법」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
- 2. 「수의사법」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 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의 축산 관련 기관
- 3. 「수의사법」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 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 는 동물 보호단체
- ③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 는 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 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 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 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 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-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 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 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 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

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 런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.

- ⑤ 시·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

 미달하게 된 경우
- 3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
- 4.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- 5.
 제4항에
 따른
 치료
 경비를

 거짓으로
 청구한
 경우
- 6.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

⑥ 시·도지사는 제2항 및 제5 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 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.

제39조(수출 등의 금지) ① 국보, 저 보물,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 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. 다만,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, 그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~ ⑤ (생 략)
-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
 <삭 제>

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

 받아 수출할 수 있다.
- 1.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 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 본·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 우
- 2.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

베39조(수출	등의	금지)	1	<u>국보,</u>
보물				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 <<u>삭 제></u> 념물의 경우

⑦ 문화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⑧ 문화재청장이 제7항에서 정 │ <삭 제> 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 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 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.

제40조(신고 사항) ① 국가지정문 지 화재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 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 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. 다만,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

<삭 제>

제40조(신고 사항) ①

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 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동식물의 종(種)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소유하고 있는 경우
- 9의2.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을 부검하는 경우
- 9의3.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,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경우
- ②・③ (생략)

제41조(동물의 수입·반입 신고) <u><</u>삭 제>

-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(種)[아종(亞種)을 포함한다]을 국외로부터 수입·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

1. ~ 8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<u><</u>삭 제>

<삭 제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,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 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제87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저 문화재청장이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
 을 <u>사적, 명승, 천연기념물로</u>
 지정하는 경우
 - 2. · 3. (생략)
 - ② ~ ⑥ (생 략)

제88조(청문) 문화재청장, 시·도 저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세87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-
1
<u>사적으로</u>
2.・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데88조(청문)

- 1. ~ 3. (생략)
- 4.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 료소의 지정 취소
- 5. (생략)
- 제89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제89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1. ~ 1의3. (생 략)
 - 2.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 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 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
 - 3. 4. (생략)
- - ① ② (생략)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 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 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
 - 2. · 3. (생략)

1. ~	3. (현행과	같음)
<삭	제>	

5. (현행과 같음) 의제) -----

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
제92조(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) 제92조(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)

-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생 략)

제95조(<u>사적 등에의</u> 일수죄) 물을 지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<u>사적, 명승 또는 천</u> 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 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제99조(무허가 행위 등의 죄) ①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(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(보호물,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)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
- 2. 제35조제1항제4호(제74조제2)

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

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허가

 없이 명승, 천연기념물로 지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95조(<u>사적에의</u> 일수죄)
사적
<u>.</u>
제99조(무허가 행위 등의 죄) ①
,
1
보호물 및 보호구역
<u> </u>

<삭 제>

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 또 는 보호구역에서 동물, 식물, 광물을 포획·채취하거나 이 <u>를 그 구역 밖으로</u> 반출한 자

- 3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100조(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천연기념물(시·도지정문화 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)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동물 의 서식지, 번식지,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 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
- 제10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· 1의2. (생략)
 - 2. 제40조제1항제6호·제9호· 2. 제40조제1항제6호-

	3.	(현	행과	같음)		
	2	(현	행과	같음	-)		
제	100)조(행정	명령	위반	등의	죄)
	1	(처:	체 귀	같음)		
				包百)		
	< 4	<u> </u>	제>				

제103조(과태료) ①
·.
1 • 1의2 (현행과 같음)

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(제7 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<u>2</u>의2.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<삭 제> •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<u>자</u> 3. ~ 7. (생략) ② ~ ⑤ (생 략)

_	-	-	$\overline{}$	-	-	-	_	-	-	$\overline{}$	_	$\overline{}$	_	_	_	_	_	-	-	-	$\overline{}$	-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-	_	_	_	_	_	-	_	_	-	-	_	_	_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